

1단계: 교육봉사활동(총 60시간) 실시 및 계획서 사전 제출

1

봉사계획단계

- ✓ 봉사활동 기관
개별 섭외하기

2

계획서 제출

- ✓ 기관 종류 파악
 - 학교, 유치원
 - 비영리기관
- ✓ 학교, 유치원일 때
 -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
- ✓ 비영리기관일 때
 - 교육봉사활동자율선택신청서 제출

3

승인 후 시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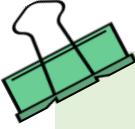
- ✓ 행정실 승인
(통상 1주일 이내)
- ✓ 봉사 시작하기



II.

교육실습 I (교육봉사활동) 이수방법

EWHHA,
THE FUTURE
WE CREATE



계획서의 종류(전국 유,초,중,고등학교)-메일 제출

【서식 1】교육봉사활동 계획서

교육봉사활동 계획서

교육봉사자 인적 사항	성 명	학 번	
	대학(원)	학과(전공)	
교육봉사 활동기관	휴대전화	이메일	
	기 관 명	연락처	
	주 소	<small>소재지 주소 기입하세요 우편이자 주소 기입하세요</small>	
구 분	<input type="checkbox"/> 본교 교직부	<input type="checkbox"/> 동행프로그램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
	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 교육봉사	<input type="checkbox"/> 자율학기/학년제 교육봉사	
교육봉사 예정 활동	<input type="checkbox"/> 학교유치원 포함	<input type="checkbox"/> 학교 외	<input type="checkbox"/> 긍정적 보상 없음
	시간	1일 () 시간 / 총 () 시간 예상	
	내용		

후속의사항

가. 유·초·중·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시행되는 순수교육 활동의 무보수 교육 활동을 인정한다. (※ 교과목 학습지도, 진로 및 진학, 학습, 학교 생활에 대한 인트라,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도, 중학교 성교육 교실 지도, 초등학교 둘째교실 지도 등), 금식 지도, 아간장을 축제의 일환으로, 도서관 관리 청결 등 교육적 적합성이 있는 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.
나. 교육봉사 시 후원 최대 8시간만 인정하여, 이동시간, 사전교육 및 준비시간을 제외한 순수 교육봉사시간만을 인정한다.
다. 교육봉사 시 후원 최대 8시간만 인정하여, 이동시간, 사전교육 및 준비시간을 제외한 순수 교육봉사시간만을 인정한다.
라. 서둘러 동행 프로그램, 풀프로그램, 경우, 각 학교에 따라 교과목 학습지도도, 특기적성지도도,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, 초등 둘째교실, 종학회 발표후 공부방, 체험학습 지원만 인정하며, 그 구체적인 활동 내용 역시 단순 업무 보조 등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수·학습 활동을 인정한다. 또한 동행 교육봉사활동 실적은 본교 '사회봉사' 과목의 실적으로 이용 활용할 수 없음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.
마. 봉사 기관으로부터 긍정적 대가를 받을 경우 교육봉사로 인정하지 않는다.
바. 유교, 초교, 특수(종종 특수 제외)를 제외한 다른 전공 및 학과의 경우 종학교 자유학기(학년)제 교육봉사 활동의 시험을 적극 권장한다.

위와 같이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하고자 하오니,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출 일 : 년 월 일
신 청 인 : (인)

* 교육봉사 이수내용이 계획서와 현저히 달라져서 교육봉사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허 가 여 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허가	확인자	사범대학	학과장/지도교수 (인)
	<input type="checkbox"/> 몰허		일반대학교직과정	교직부장 (인)
		교육대학원	부원장 (인)	

봉사기관이 전국 유,초,중,고등학교인 경우

▶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 목록

- 『유아교육법』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
- 『초,중등교육법』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
- 각종학교, 고등기술학교, 산업체 부설 중, 고등학교
- 『초,중등교육법』 제2조에 의한 '각종학교'로 인가된 대안학교, 외국인학교
- 타 법령에서 『초,중등교육법』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



II.

교육실습 I (교육봉사활동) 이수방법

EWHHA,
THE FUTURE
WE CREATE



계획서의 종류(비영리기관: 본교 교원양성위원회 인정 7곳)-행정실 방문, 등기 제출

①

[6]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서(교과(전공) 및 학과(전공) 학과(전공))

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서

수강 학기	학년도	학기	신청일자	년 월 일
학과(전공)	대학원		학과	전공
이름			학번	
연락처	집 :	핸드폰 :	e-mail :	
봉사 기관 관련 사항	봉사 기관명	운영주체		
	대표자	성명 년도	주요사업	
	전화번호	Fax번호		
	주 소	(우편번호 -)		
기관 담당자 확인	작명 :	성명 :	(인)	전화번호 :
봉사 활동 관련 사항	<첨부자료 작성 및 준비> ① '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봉사활동 계획서' ② 해당 기관의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 적격성 판정을 위한 증빙 서류(예: 기관 신고필증, 허가증 등) ③ 해당 기관의 개요(예: 홈페이지 기관 소개 부분 인쇄 또는 기관 공식 홍보물 등)			
심의 사항	심의대상 예부	대상() 비대상()	심의결과	기() 부()
	심의자	사범대학	학과장/지도교수	(인)
		일반대학 교직과정	교직부장	(인)
	교육대학원	부원장	(인)	

접수 NO. _____

교육봉사활동 접수확인서

수강 학기	학년도	학기	신청일자	년 월 일
학과(전공)		학번		이름
교육봉사 기관명	교육봉사 활동명		설명	성의대상 / 비대상

- * 유의사항 : ① ※ 표시 부분은 수강생은 작성하지 마십시오.
② 신청서 접수 시에 접수확인서를 꼭 받아보십시오.
③ 수강학기: '교육실습I' 교과목 수강학기 또는 수강 예정 학기임.

②

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봉사활동 계획서

1. 교육봉사활동사항

교육봉사기관명	
교육봉사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

2. 교육봉사활동내용

프로그램명	
프로그램 내용	
봉사활동 세부내용 (봉사자원종내용)	
봉사활동 요일/시간	

3.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기관 인정 지침

가.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기관으로 적격한 기관은 <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>으로서,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에 바탕을 둔 기관이나 단체이어야 하며, 반드시 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봉사지도자(슈퍼바이저)가 있어 교육봉사자의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.

나. 기관 선택 후에는 기관 및 활동이 '교육봉사'에 적격한 것인지를 밝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심의 담당자(사범대·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/ 일반대학 교직과정 - 교직부장 / 교육대학원 -부원장)에게 제출합니다. 해당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① '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봉사활동 계획서'
② 해당 기관의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 적격성 판정을 위한 증빙 서류
③ 해당 기관의 개요(예: 홈페이지 기관 소개 부분 인쇄 또는 기관의 공식 홍보물)

다. 심의 결과가 '승인'이면 봉사를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고, '반려'이면 다른 적격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.



비영리기관 봉사 가능 기관 목록

-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
-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
- 이대복지어린이집
- 서대문구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 지원센터
- 성산종합사회복지관
- 고척도서관
- 노원평생학습관



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